

 신안산대학교	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	규정 번호	3-1-28
		제정 일자	2024.4.15.
		개정 일자	
		책임부서/팀·계	교수학습지원센터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신안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라 한다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자의 효과적인 수업활동과 학습자의 체계적인 학습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직원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센터에는 연구교수 또는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조(업무) 본 센터는 교수학습 관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
2. 교수학습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및 분석 업무
3. 교수자를 위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, 교육(연수, 워크숍, 수업컨설팅 등) 운영에 관한 사항
4. 학습자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향상프로그램 정보 제공
5. 강의 우수교원 선발·포상 및 우수사례발표 관련 업무
6. 기타 비교과 및 교수학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제5조(자료수집 및 검사의 활용)

① 센터는 교수와 학생의 교육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교수와 학생의 학습지원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조사(기초학습능력 진단검사, 프로그램 요구조사,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등)를 시행할 수 있으며, 검사 및 조사결과는 학생지도 및 교육프로그램 계획, 프로그램 구성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 2 장 위원회

제6조(위원회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교수학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
3. 전년도 운영계획 평가와 개선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
제7조(구성) 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의 임기는 센터장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8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『회의비 지급 지침』에 의거해 회의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